

장성군의회 공고 제2020-10호

제3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

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 공고함.

1. 집회일시 : 2020. 5. 8.(금) 11:00
2. 집회장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주요안건
가. 조례안 등

2020. 5. 4.

장성군의회의회장 차 상

